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시행 2024.3.4.]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규정 제906호, 2024.3.4., 타규정개정]

제정 2017.10.26.(제646호)

타규정개정 2024.03.04.(제906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7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4.>

제2조(용어의 정의) “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자)을 소지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기준 작성

나. 교수·학습 지원

다. 장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개인상담

라. 도우미 지원제도의 운영

마. 취업진로 지원

바. 장애학생 이동지원

사.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제공

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

자. 기타 장애학생 지원 개선 업무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가.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나.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다. 취학편의 지원

라. 정보접근 지원

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센터를 대표한다.

③ 센터의 행정 및 장애학생 관련 전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센터의 업무 중 교수·학습에 관련된 업무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 중 상담에 관련된 업무는 학생상담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칙) 이 규정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제646호, 2017.10.2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6호, 2024.3.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